

생활비용 보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
■ 일반 사항	
가구원 범위	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
소득인정액	월 소득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■ 소득 평가	
①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소득 ○ 사업소득 : 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그 밖의 사업소득 ○ 재산소득 : 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 ○ 공적이전소득 :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나 그 밖의 금품
■ 재산의 소득환산	
②승용차 재산	2500cc이상 : 자동차 가액×환산율(100%×1/3)
일반재산	<p>③토지 : 공시지가÷지역별 적용율×환산율(4.17%×1/3)</p> <p>④주택·건출물: 공시가격(국토해양부 제공)÷시가 보정율 0.9 ×환산율(4.17%×1/3)</p> <p>⑤전·월세 보증금×환산율(4.17%×1/3)</p> <p>⑥2500cc미만 : 자동차 가액 환산율(4.17%×1/3)</p> <p>※ 차령6년초과차량·승합차·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.</p>
⑦금융재산	금융재산 총액 ×환산율(6.26%×1/3)
■ 공제	
⑧기초공제	대도시 5,400만원 중소도시 3,400만원 농어촌 2,900만원
⑨대출금	금융권 대출 전액
■ 소득인정액 계산식	
<p>①+②+(③+④+⑤+⑥+⑦)-⑧-⑨)</p> <p>※ ③~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,⑨를 순차적으로 공제 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→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, 공제금액>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</p>	

※ 소득은 전년도 소득전체를 월 평균으로, 환산 대상 재산(금융·부동산 등)의 기준 일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(공공기관 공시재산은 공시일)

※ 재산별 세부사항은 유아학비 산정기준 준용